



제418회국회(임시회)
제7차 정무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한대상자의 거래 제한범위 확대 등〉

- 강민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72호)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21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거래 제한범위 확대	4

I. 제안경위

1. 강민국의원안

가. 제 안 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9. 6.

다. 회 부 일 : 2024. 9. 9.

2. 김상훈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9. 24.

다. 회 부 일 : 2024.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강민국의원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라 한다)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공중 등 협

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지적받음.

따라서,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내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상승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FATF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직접 소유하는 자금·재산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재산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등).

2. 김상훈의원안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의 금융거래등과 재산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에서 현행법상 금지행위 대상이 제한대상자 본인 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에만 한정되고 제한대상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금 또는 재산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금동결 조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본인명의로의 자금 또는

재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으로 확대하여 국내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안 제 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거래 제한범위 확대

□ 개정안은 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함) 지정대상을 현행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 관련 있는 개인·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까지 확대하고(강민국의원안), ② 금융거래나 재산거래가 제한되는 범위를 현행 ‘제한대상자 본인’에서 ‘제한대상자가 직접·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자금·재산)’까지 확대하려는 것임(강민국·김상훈의원안).

현행	강민국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 ----- ----- ----- ----- ----- ----- ----- ----- ----- -----단체 및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을 제4항제1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① ----- ----- ----- ----- ----- ----- ----- ----- ----- ----- -----단체를 제4조의2 제1항제1호----- ----- -----

현행	강민국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 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u>고시된 자가</u>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금융거래 등제한대상자</u>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 2. (생략) ⑤ 제4항제1호의 행위에 대한 <u>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u> ⑥ ~ ⑧ (생략) <신설> <신설>	<u>호</u>-----.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고시된 자(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아닌 자로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 항과 제5조제1항에서 같다)가</u> ----- -----<u>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u>-----. 1.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소유 또는 통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동결조치)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

현행	강민국의원안	김상훈의원안
		<u>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이나 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u> <u>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領收)</u> <u>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u> <u>② 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한</u>

현행	강민국의원안	김상훈의원안
		<u>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u> ③ 제1항에 규정된 소유 또는 관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제4조제4항</u>에 따른 허가를 받고 <u>제4조제4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u>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u> 또는 그 상대방 2. <u>제4조제4항</u>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u>제4조제4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u>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u> 3.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지정되었다는 사실 및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이라는	제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u>제4조의2제1항</u>에---- ----<u>제4조의2제1항</u>---- ----- -----<u>자</u>----- ----- 2. <u>제4조의2제1항</u>에---- ----- <u>제4조의2제1항</u>----- ----- <u>자</u> 3. ----- ----- ----- -----<u>제4조의2제1항</u>에-----<u>제4조의2제1항제2호</u>에-----

현행	강민국의원안	김상훈의원안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	<u>사실을 알면서 같은 조</u> -----	----- <u>자의</u> ----- -----

□ 현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량무기확산등과 관련 있는 개인·법인·단체를 제한대상자¹⁾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 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된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금융회사 등과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동산·부동산·채권 등 재산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처분이나 점유이전·원상변경 등 일체의 거래행위(이하 “재산거래”라 함)가 제한됨.²⁾

-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제2024-39호)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 및 각 후속결의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 제재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아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858명)
 -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2001년)
 -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와 그 후속결의
- 2) 「공중 등 협박목적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 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領收)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 금융회사등³⁾(그 종사자 포함) 역시 금융위원회 허가가 없는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 등을 할 수 없으며,⁴⁾

○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면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그 제한대상자와 재산거래를 한 상대방 역시 처벌받게 됨.⁵⁾

□ 그런데, 현행법은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대량무기확산 등과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이하 “테러관련자”

3) “금융회사등”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함(「공중 등 협박목적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파.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중 등 협박목적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중 등 협박목적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

라 함)로 한정하고,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본인의 직접 재산에 대해서만 금융거래·재산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금이나 재산 관련 거래를 제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⁶⁾는 2019년 실시한 제4차 상호평가에서 현행법에 따른 자산동결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금·재산 등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음.

< FATF 권고사항 >

(b) 동결의무는 다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 i) 특정 테러행위·음모·위협과 연결되거나 지정된 개인·단체가 소유·지배하는 모든 자금·재산
- ii) 지정된 개인·단체가 직접·간접적으로 단독·공동으로 소유·지배하는 자금·재산
- iii) ii)에서 파생되거나 생성된 자금·재산
- iv) 지정된 개인·단체를 대리하거나 지시를 받는 개인·단체의 자금·재산

□ 이에 개정안은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 제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테러 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6)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파리정상회의 합의로 설립된 기구로,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은 현재 전세계 약 180여개국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분야의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FATF 및 관련 지역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며,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함.

□ 다만, 개정안들의 취지는 동일하나 세부적 내용에서 차이가 있고, 일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음.

< 강민국의원안과 김상훈의원안 비교 >

구 분		현행법	강민국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제한대상자 지정대상		테러관련자	① 테러관련자, ② 테러관련자가 <u>직·간접적으로</u> 소유·통제하는 법인	현행과 같음
자 산 동 결	제한 대상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①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②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u>제한 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u> 소유·통제하는 법인	“누구든지”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대리인 지시를 받는 자 등 모두) ※ <u>개인·법인 불문</u>
		금융회사, 재산거래 상대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한 행위	금융거래, 재산거래 시 허가 필요	현행과 같음	제한대상자가 <u>직·간접적으로</u> 소유·관리하는 자금·재산에 대한 금융거래, 재산거래 시 허가 필요

□ (제한대상자의 의미) 현행법 제4조제1항⁷⁾은 금융거래(제4항제1호) 및 재산거래(제4항제2호)가 제한되는 자를 제한대상자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 관련 있는 개인·법인·단체를 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강민국의원안 제4조제4항은 ‘제한대상자’와 ‘제한대상자로 지

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된 자’를 같은 의미로 혼용⁸⁾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변경하여, 제한대상자를 다시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미지정 상태의 제한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는데⁹⁾,

- 개정안 제4조제1항¹⁰⁾은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 관련 있는 개인·법인·단체와 그 개인·법인·단체가 소유·통제하는 법인을 “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만 규정하여, 미지정 상태의 제한대상자가 있을 수 있음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함.

현행법	강민국의원안
제한대상자 =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제한대상자 =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 미지정 상태의 제한대상자

- 강민국의원안의 별칙에 따르면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뿐만 아니라 미지정 상태의 제한대상자도 허가 없이 금융거래나 재산거래를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므로, 별칙 적용의 명확성 등을 위하여 제한대상자에 ‘지정 제한대상자’와 ‘미지정 제한대상자’가 모두 포함됨을 명시화할 필요성이 있음.

8)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법 제4조제4항)

9) 「강민국의원안」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아닌 자로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 항과 제5조제1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10) 「강민국의원안」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 및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을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한대상자 지정대상 확대) 김상훈의원안은 현행법과 같이 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테러관련자로 한정한 반면, 강민국의원안은 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현행 테러관련자 뿐만 아니라 테러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법인까지로 확대하였음.

현행법	강민국의원안	김상훈의원안
테러관련자	①테러관련자, ②테러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법인	현행과 같음

- 개정안들은 테러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테러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법인을 명확히 하여 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한다면, 제한대상자임을 알지 못하고 거래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자산 동결 범위 확대) 자산 동결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들은 모두 제한대상자 본인 소유뿐만 아니라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관리)하는 자산까지 동결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음.

< 강민국의원안과 김상훈의원안에 따른 자산 동결 방법 >

	강민국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제한 대상	①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②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법인	“누구든지” (제한대상자 본인 대리인 지시를 받는 자 등 모두, 개인·법인 불문)
	금융회사, 재산거래 상대방	
제한 행위	금융거래, 재산거래 시 허가 필요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자금·재산에 대한 금융거래 재산거래 시 허가 필요

- 강민국의원안은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법인’이 허가 없이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 하는 것을 금지한 반면, 김상훈의원안은 ‘제한대상자 본인’,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법인’ 뿐만 아니라 ‘제한대상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에 따르는 개인 등 누구든지’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허가 없이 금융거래나 재산거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음.
- 김상훈의원안은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 제한 대상을 ‘누구든지’로 규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강하게 억제하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강민국의원안은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법인’까지의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를 제한하였는데, FATF의 권고사항¹¹⁾과 비교해 볼 때, ‘제한대상자를 대리하거나 지시를 받는 개인’의 자산은 동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제한대상을 확대할 경우 그 대상 범위가 모호하고 침익적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만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임.
-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 제한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률로 이를 규정할 때에는 그 대상 및 요건 등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11) b) 동결의무는 다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 i) 특정 테러행위·음모·위협과 연결되거나 지정된 개인·단체가 소유·지배하는 모든 자금·재산
- ii) 지정된 개인·단체가 직접·간접적으로 단독·공동으로 소유·지배하는 자금·재산
- iii) ii)에서 파생되거나 생성된 자금·재산
- iv) 지정된 개인·단체를 대리하거나 지시를 받는 개인·단체의 자금·재산

- 강민국의원안은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 제한대상을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법인’으로 한정했다는 측면에서 구체성과 명확성의 정도를 일정 부분 높인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강민국의원안 제4조제1항에서 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이미 테러관련자뿐만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법인으로 확대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4항에서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 제한대상을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외에 미지정 상태인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법인’까지 포함하였는데,

구 분	강민국의원안	
제한대상자 지정대상 (제4조제1항)	(현행) 테러관련자	
	(추가) 테러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법인	
금융거래· 재산거래 제한대상 (제4조제4항)	(현행)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관련자	
	(추가)	
	지정	① 1차 제한대상자(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관련자) ② 2차 제한대상자(1차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법인)
	미지정	③ 제한대상자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법인

- 이 경우, ①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가 제한되는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범자(미지정 제한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 ② 지정된 제한대상자와 미지정 상태의 제한대상자 모두 허가 없이는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가 제한¹²⁾됨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제한대상자는

12) 위반 시 동일한 벌칙(3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적용

그 지정 시에서 현행법 제4조제2항13)에 따른 법무부장관 등의 사전 동의를 필수적이며, 해당 지정 행위에 대해 이의신청도 가능한 반면, 미지정 상태의 제한대상자는 이러한 이의제기 절차 등도 없이 벌칙 적용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양 당사자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소유·통제(관리)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등) 개정안은 테러관련자(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관리)하는 법인(자산·재산)과 관련하여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통제(관리)하는 경우에는 어느 수준까지를 ‘소유·통제(관리)’로 볼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강민국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신설> <신설>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⑨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u>소유 또는 통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u>제4조의2(동결조치) ③ 제1항에</u>

1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대량살상무기확산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제4조의2(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현행	강민국의원안	김상훈의원안
		<u>규정된 소유 또는 관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그런데, 이 소유·통제(관리) 기준에 해당하여 테러관련자(제한대상자) 관계 법인(자금·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나 재산거래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¹⁴⁾ 등 벌칙 적용을 받게 됨.

○ 즉, 이 소유·통제(관리)의 기준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유·통제(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고려하여 법률에 대략적인 사항을 규정¹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헌법재판소(97헌가8 결정¹⁶⁾)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14) 「공중 등 협박목적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3.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

15) 조문예시

⑨ 제1항과 제4항의 '소유' 또는 '지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한대상자가 해당 법인의 자금이나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해당 법인에 대하여 ... 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16) 헌법재판소 1999.1.28. 선고 97헌가8 결정: 운송사업자 등에 대해 부과되는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가 포괄적 위임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인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분담금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분담금 납부의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이 그 내용이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행사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하였음.

○ 한편, 개정안은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의 의미로서, ‘통제’와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9)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의 의미로서 ‘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통제’ 또는 ‘관리’를 ‘지배’ 또는 ‘지배력’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정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포괄적인 위임입법”이라고 결정함.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2.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문 의 처
02)6788-5113